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3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4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정비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정비

「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)

- 안 제4조제1항제3호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을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으로 정비

- 제4조제2항제3호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적용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